

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	처리기간	30일
신고인	기관명			
	대표자		생년월일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주소			
변경 내용	변경 전			
	변경 후			

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